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소관

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

2002. 12.

서울특별시의회도시관리위원회

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1. 목 적

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·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,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.

2. 기 간: 2002. 11. 21(목) ~ 11.26(화) [6일간]

※제23회 정례회 : 2002. 11. 20(수)∼12. 7(토) [18일간]

3. 대상기관

위원회 선정대상기관	본회의 의결대상기관
 도시계획국 주 택 국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도시개발공사 	요

4. 감사위원회 편성

구 분	소속정당	위 원 명	사무보조직원
위 원 장 간 사 "	한 나 라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	명 영 호 김 기 철 정 동 일	전문위원 양 재 대 행정 5급 이 병 수 토목 6급 박 명 서
위 원 "" "" "" ""	한 나 라 당 """"""" 민 주 당	룡현수선기열구국구응철선 김김김김류박이이한한명 양한기열구국구응철선	행정 6급 이 경 로 행정 7급 심 원 보 안내직원 속 기 사 및 녹취요원(2명) 김 연 화 곽 승 희 타자요원(2명) 최 영 미 박 해 기

5. 일정 및 장소

일 시	감사대상기관	장 소	비고
2002.11.21(목) ~ 10:00	도시계획국	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	
2002.11.22(금) 10:00	주 택 국	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	
2002.11.25(월) ~ 10:00	지역균형발전추진단	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	
2002.11.26(화) ~ 10:00	도시개발공사	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	

6. 주요 감사사항(부서별)

도시계획국

- 2001, 2002년도 예산집행상황
- 。도시계획정책결정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-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•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·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, 용도지역·지구 및 구역의 지정, 변경에 관한 사항
- 주거지역 세분화에 관한 사항
- •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•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•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•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
- •도시개발공사 사무중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- •택지개발계획의 수립·조정 등에 관한 사항
- 재건축의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
- 5개저밀도지구를 제외한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
- •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◦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
- · 지가조사 및 산정·결정에 관한 사항
- 지적에 관한 사항 총괄·조정
- 。토지행정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-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
- 부동산 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
- 공유토지분할정리에 관한 사항 등

주 택 국

- · 2001, 2002년도 예산집행상황(특별회계 포함)
- · 주택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
- ·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
- ∘ 주택기금조성 · 운용 및 국민주택자금상환 관리
- ·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승인 · 협의
- · 5개 저밀도아파트개발기본계획 수립·관리
- 민영주택건설사업 및 민영주택분양 지도
- ·재건축·지역·직장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지도
- 전 · 월세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
- ·시 건립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의 승인·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
- 주택상담 업무 및 임대주택사업자 업무지도
- •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정리(보상, 이주, 철거)
- •국민주택건설자금의 기채 및 재개발기금 · AID차관 · 융자금의 관리
- · 주택재개발·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- 。 주택재개발 · 도심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· 주택재개발, 주거환경개선지구, 도심재개발구역의 지정·사업계획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· 주택재개발, 도심재개발,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행위완화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
- 건축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- 건축심의 및 건축위원회 운영
- 。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지도·감독
-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관련 의견청취
- ·지구단위경관관리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(조망가로 조성, 한옥보전, 문화 지구조성사업 등 특정구역정비 포함)
- 건축허가 제한 및 야간경관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

지역균형발전추진단

- · 지역균형 발전정책 수립·조정
- 재래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
- ·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법제 · 제도개선등 관련사항
- · 재래시장 환경개선 · 경영현대화사업지원
- ·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재정 · 세제지원에 관한사항
- ·지역별 경제 ·교육격차해소시책 추진사항 등

- 2001, 2002년도 예산집행 상황
- 경영목표,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
- 원가관리 통제기준 수립 및 원가 절감에 관한 사항
- ∘ 공사, 용역, 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
- 재물조사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처리에 관한 사항
- ◦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
- 택지개발의 후보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
- •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- 재개발,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택지개발,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- 。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·감독·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

- · 건축공사의 소요자재의 수급계획의 수립·운영에 관한 사항
- ◦건축공사의 발주·감독·감리 및 설계변경, 공정관리, 준공에 관한 사항
- ◦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·관리에 관한 사항
- 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
- · 2001, 2002년도 국정감사, 감사원,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,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등

7.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

- 가.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(2001 ~ 2002.10 연도별 구분작성)
- 나. 2001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
- 다. 2002회계년도 세입·세출 집행 현황
- 라.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
- 마. 2002년도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
- 바. 2001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
- 사. 2002년도 소관 부서 업무내용과 관련한 신문・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 자료
- 아. 2002년도 진정, 청원,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내역 (처리, 보류, 미처리, 처리결과 등으로 구분 기재)
- 자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

8.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

□ 감사지적사항 및 자료요구 유형별 건수

구	분		건 수	비고
총	계		126	
시정 및 처리요구	소 계		64	
	도시계획국	소관	23	
	주택국	소관	9	
	지역균형발전추진단	소관	15	
	도시개발공사	소관	17	
건의사항	소 계		41	
	도시계획국	소관	3	
	주택국	소관	12	
	지역균형발전추진단	소관	13	
	도시개발공사	소관	13	
자료요구사항	소 계		21	
	도시계획국	소관	3	
	주택국	소관	3	
	지역균형발전추진단	소관	5	
	도시개발공사	소관	10	

가.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

도시계획국

- (1) 주요 산 및 하천변 경관대책 추진 일정이 너무 느슨하므로 경관지구 조례 제정 및 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단축시행 방안 강구
- (2)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은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후 발표했어야 함에도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치 않았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
- (3)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므로 간소화 대책 강구
- (4) 주요 산 주변의 경관관리가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민원발생의 소지제공, 형평성 문제 대두, 기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경관문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경관관리 대책 요망
- (5) 공원·녹지시설 확충은 매우 필요한 사업임에도 시설 결정후 사업시행 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공원 등 조속 시행방안 강구
- (6) 2001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7억원이 전용되는 등 미흡한 예산편성 이었다고 판단되는 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요망
- (7) 강북개발계획에만 치우쳐서 강남의 일부 소외된 서남권 지역의 격차 가 심하니 도시기반시설 확충지원 등 균형발전 방안을 강구 할 것
- (8)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치구별 상업지역의 비율조정이 필요하니 낙후된 지역의 상업지역을 확대 방안 강구
- (9) 종전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중 2002. 6.30일자로 실효된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 재추진 등 합리적인 대책 강구
- (10) 가락동 80번지 체비지 매각에 따른 모순점이 많다고 보는데 체비지 매각시 지장물 철거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조례개정 검토

- (11) 뚝섬지구가 시장이 바뀜에 따라 문화관광타운에서 공원으로 번복 결정된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판단됨.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
- (12) 재개발, 재건축아파트 건립시 도시기반시설(학교)을 우선 확충해야 함에도 편법개발로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요망(예, 신당3주택재개발구역: 남산타운아파트 5,150세대)
- (13)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은평구로 이전 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 적 측면에서 뉴타운 조성계획과 배치되며, 북한산의 경관저해, 교통, 공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검토 할 것
- (14) 걷고 싶은 거리로 시범 조성한 돈화문길은 자동차수리업소 난립으로 공해유발과 아울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, 주변지역을 포함 정비대책 강구
- (15)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관련 민원발생 및 자치구와의 갈등 등 문제점 이 없도록 2003년6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요망
- (16) 강북뉴타운 개발계획과 관련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 따른 투기열풍의 우려가 염려되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 요망
- (17) 가락동 통일촌 체비지 매각관련 많은 의혹제기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되는 바 향후 체비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
- (18) 상암택지개발 제4근린공원내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건립사업 중지 와 관련 향후 대책 수립 요망
- (19) 국유철도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 상업시설 위주의 역사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방안 강구
- (20) 상암택지개발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블럭단위개발 등 지원 대책 강구
- (21)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산림이 잠식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

- (22) 강남구 삼성동, 대치동, 역삼동 등의 지역에 존치 실익이 없는 전용주거 지역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
- (23) 준공업지역이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것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보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, 준공업지역 보유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강구

주 택 국

- (1)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감사위원들의 검토시간이 절대 부족하니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토록 시정 할 것
- (2) 환경영향평가는 건축심의전 시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 법규정의 정비 요망
- (3) 마포구 서강시범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 재경부소유 부지의 매입이 거주자의 영세성으로 어려운 형편인바, 이에 대한 장기임대 방안 등 강구
- (4) 자치구별 임대료 보조금 지원 실적의 편차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할 것
- (5)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요구자료의 미제출 및 위원별 개별요구자료의 지연 제출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망
- (6) 도심재개발기금의 이자율을 5%에서 3~4%로 낮추고, 담보융자에서 신용 보증제도로 변경하는 방안 강구
- (7) 종로구 청진동 도심재개발구역중 일부지역은 민원이 많으니 해제 방안 을 검토 할 것
- (8) 임대보조금의 지원실적이 극히 저조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람
- (9)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 공사를 하지말고, 재건축. 재개발조합에서 직접 건립하여 공급하는 방안강구 요망

지역균형발전추진단

- (1)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로 인하여 투기행위가 조장되고 있는 바 이는 기대 심리에 의한 개발이익을 겨냥한 것으로,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기대치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해당 토지주들에 의한 개발반대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요망
- (2) 현재까지의 재개발과정에서 나타난 토지·건물소유자 및 세입자들의 민원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공영개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는 실정인 바,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망
- (3) 지역균형발전이란 서울시 전역의 도시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각 지역에 맞는 발전을 계획하여야 할 것인 바, 강남에서 소외된 서남권지역 (관악, 구로, 영등포, 금천구 등)에 대한 개발계획도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할 것
- (4) 강북 뉴타운 3개 시범지구 지정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이 안된 계획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됨. 이에 대한 후속 보완대책 강구 요망
- (5) 뉴타운 프로젝트 같은 대형계획은 용역을 통한 사전준비후 정책결정이 필요함에도 선 발표후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어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 다고 판단되는 바, 이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요망
- (6) 수도권의 인구집중 및 과밀화가 심각한데 뉴타운 개발에 따른 향후 인구 문제 등 해소방안 수립
- (7) 뉴타운계획 등 각종 시책사항 발표시 정책의결기관인 시의회와 도시 관리위원회에 사전협의 등 제도적인 절차 마련
- (8) 은평 뉴타운 시범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, 간선도로변 교통처리 계획 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보완 대책 강구
- (9) 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이 예상되는 바, 이에 대한 대책수립 요망

- (10)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방안 마련
- (11) 뉴타운 개발에 따른 원주민의 입주를 제고하는 방안 강구
- (12) 뉴타운 개발계획은 종합적인 검토 없이 성급한 발표로 인해 많은 부작용 및 문제점이 예상됨. 치밀한 계획과 심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서울시 전체 지역이 균형개발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(13) 뉴타운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3곳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, 앞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형평성 있는 개발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강구
- (14) 열악한 재래시장 정비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조속 추진 요망
- (15)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에 대한 상업지역비율 확대방안 마련

- (1) 도시개발공사 건립 아파트도 민간기업이 건립하는 아파트와 경쟁할 수 있 도록 수준을 제고하고, 층간소음 예방 및 신소재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 품질향상 도모
- (2)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해 공사의 관리처를 이원화하는 관리 방안강구
- (3) 영구임대아파트 거주기간 제한과 관련 수급권탈락자(11,000세대)에 대한 조속한 대책 수립
- (4) 상암지구 가짜입주권 언론보도와 관련 정밀한 실태조사와 홍보방법 등 향후대책 강구
- (5)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및 대책 수립 요망
- (6) 공사원가를 절감하며 고급자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, 민간아파트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마감재 등 수준향상 방안 강구

- (7) 아파트 설계공모와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입상작품을 아파트 설계시 최대한 반영할 것
- (8) 영구임대아파트가 특정지역(강서·노원)에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어,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 수립 요망
- (9) 임대아파트의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장·단점을 비교하여 앞으로의 관리 방법 개선 요망
- (10) 업무보고서,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내용중 오·탈자가 상당수 있으니 앞으로 완벽한 검토후 제출바람
- (11) 북촌한옥 가꾸기사업과 관련 매입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요망
- (12) 공공(국민)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별도 대책 수립 요망
- (13)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건물층고 등 제한을 할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인한
 - -노원·중계지구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한 대책과
 - -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
- (14)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계획 수정·보완 요망
- (15) 다가구주택 매입계획에 따르면 2002.1월부터 1·2차에 걸쳐 374동 2,580세대를 신청 받아 82동 612호가 매입완료 되었으나,
 - 계획목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아파트관리와 달리 관리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, 앞으로 효과적인 관리 방안 강구 요망
- (16)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아파트 분양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사유로, 민원인 감액요구에 의해 감액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 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
- (17) 장지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, 육영재단 등의 존치 방안 강구

나. 건의사항

도시계획국

- (1) 동대문구 장안동 329-3일대 지역은 용적률이 300%로 26층 규모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, 바로 인접한 329-2일대는 용적률이 200%밖에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
- (2) 종로구 부암동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 건의
- (3)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

주 택 국

- (1)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운영과 같은 주택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서울 시정이 신뢰성을 잃고 있으니,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안전진단 업무를 자치구에서 객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
- (2) 잠실 저밀도지역 재건축관련 사업승인에 따른 시기조정이 절대 필요하니 서울시 계획대로 시행하기 바람
- (3) 뉴타운 건설 등 개발계획이 너무 성급히 발표되고 있는데 신중하게 재검토 하여 사업별로, 단계별·시차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
- (4) 북촌가꾸기 사업구역내 다세대·다가구·상가건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 이 성행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입후 한옥으로 보존 할 수 있는 방안 강구

- (5) 북촌 가꾸기 사업과 관련 한옥 밀집지역의 한옥을 서울시가 전량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조치하거나, 가건물이 딸린 한옥을 매입하여 가건물을 없애는 방향으로 북촌을 가꾸도록 건의
- (6) 종로구 신영상가아파트는 복개천 위에 위치하고 안전도가 D급으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방안 강구
- (7)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사업시행시 최우선으로 주차장등 도시기반시설 부터 확보하도록 한후 개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기 바람
- (9) 주택재개발, 재건축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
- (10)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상습침수 지역의 다가구주택 매입후 효과적인 관리대책 강구 바람
- (11) 건설교통부에서 준비중인 위법건축물 완화법령이, 완화대상이 일정 규모이상(50평이상) 건축물만 적용되고, 시민들의 소규모 면적은 제외된다고 하는데, 이는 가진 자만의 특혜이므로 개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건교부와 협의 바람
- (12) 장기미준공 아파트 해결방안의 조속한 마련요망

지역균형발전추진단

- (1)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의견조사는 객관성이 있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, 앞으로는 객관성이 있는 조사기관에 맡겨 추진토록 하기 바람
- (2) 재래시장 활성화관련 용역은 전문성을 고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발주 건의

- (3) 개발계획 등 정책결정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의 동의하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
- (4)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홍보기능 강화
- (5) 지하철 10호선 건설계획 조기추진 건의
- (6) 강・남북간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서울사대부고(종암동) 이전 반대 건의
- (7) 강동구 천호 1,2,3,4동을 생활권 단위계획으로 수립 요망
- (8) 광진교의 천호동방면 램프설치 건의
- (9)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의
- (10) 성동구치소 이전 건의
- (11) 백화점, 극장 등 과다 설치된 자치구는 추가 설치를 제한하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설이 부족한 자치구에 설치토록 건의
- (12)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인력중 외부 전문가 확충 건의
- (13) 종로2가 새마을운동협의회 부지에 조성된 소공원에 실버타운 건립 건의

- (1) 열 공급관 파괴로 인한 수요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 바람
- (2) 뉴타운 건설계획 등 도시개발공사 시행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시의회와 협의체제 유지 바람
- (3) 서울시 간부진의 퇴직후 도개공 재취임은 직원들의 승진기회의 박탈을 초래하니 서울시와 협의하여 개선 바람
- (4) 영구임대 아파트 밀집으로 인한 슬럼화 예방 대책 수립 건의 (밀집지역 인센티브 부여 계획 등)
- (5) 도개공의 각종위원회에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위원을 위원으로 영입 바람

- (6) 도개공 아파트명(브랜드명)을 서민주택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서울맨션, 푸른마을 등 고급화된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
- (7) 대단위 아파트단지내에 아파트형공장을 서민 생업지원차원에서 병행 신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
- (8) 공사 사장 등 간부진에 경영마인드를 갖춘 민간기업출신 전문경영인 영입
- (9) 입주아파트 단지 정문에 시공사, 감독 등 실명제표시 이행
- (10) 임대아파트 소화기 관리 및 충약등에 철저를 기하여 관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마련
- (11) 아파트 지하공간을 지역주민의 공동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건의
- (12) 택지매입과 관련 원만한 협의보상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검토
- (13) 은평뉴타운 조성사업관련 거주민 이주대책을 사업계획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바람

다. 자료요구사항

도시계획국

- (1) 뚝섬 문화관광타운 개발구상(시정연)과 뚝섬지구단위계획(평화엔지니어링) 은 과업내용이 유사하고 용역비가 중복 투자되었다고 판단되는 바, 이에 대한 비교 분석자료 제출
- (2)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현황내역 및 분포도 자료
- (3) 3개 뉴타운 예정지(시범단지) 발표경위와 회의자료 제출

주 택 국

- (1) 송파구 오금동 105번지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의 적법여부 분석 결과 및 허가서류 일체
- (2) 현행 서울시 재개발, 재건축 현황자료
- (3) 재개발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공사대행 협약서 사본
- (4) 건설교통부에서 준비중인 위법건축물 완화 관련법안 사본
- (5) 송파구 통일촌 매각관련 회의록, 참석자, 법률적 근거에 대한 분석 자료

지역균형발전추진단

- (1) 3개 뉴타운 선정까지의 용역 검토회의, 회의내용, 실태파악 자료조사 내용 등 자료 제출
- (2) 뉴타운 관련 21C 서울기획위원회, 도시발전위원회 회의록 내용 제출
- (3)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는 지역간 격차 해소차원에서 형평에 맞게 해야 함에도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각기 상이한데 지역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자료 제출

- (1)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총액과 지난 5년간 부채,손실액 등
- (2) 아파트 시공업체(건축, 토목부문)계약현황(한도액, 계약금액 등 전체)
- (3) 1999 ~ 2002년 현재까지 년도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관련 현황자료
- (4) 관련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하자 보증금 현황자료 (하자보증이행증권 등)

- (5) 설계변경된 지역 지구 현황
- (6) 자체감사,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 및 국정감사 질의요지 (2001~2002 10월 현재까지)
- (7) 청량리1지구 원주민의 재산평가내용(주택규모, 보상가 등)과 입주시 아파트의 재산평가액
- (8) 도개공 자체 설계팀 운영에 따른 필요인력과 소요 인건비 내역
- (9)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지원현황자료(장학금, 독거노인, 노인정 지원 등)
- (10) 공사의 연간 이익 및 인건비 내역과 이익금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 관련자료

9.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

□ 조치의견

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, 그 결과는 의회에 서면 보고할 것을 요구함 (자료요구사항은 서면으로 제출)

□ 집행부 제출 감사 자료 내용의 미흡 및 오·탈자 등이 없도록 향후 철저한 검토후 제출토록 요구

10. 중요근거 서류 : 없음